
「화학물질관리법」 최근 개정사항

2017. 11. 23.



한강유역환경청

목 차

I. 화학물질관리법(최근개정 및 입법예고 사항)	1
II. 고시 개정	61
III.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안내	76
※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84

I. 화학물질관리법

(최근개정 및 입법예고 사항)

1. 법 제2조(정의)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금지물질) 유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 환경부장관이 고시
- ※ [환경부고시 제2017-000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2017.00.00., 일부개정]
-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시행규칙 별표 10]
 - (허가물질) 유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 환경부장관이 고시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유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영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
 -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 (**취급**)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

2.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p> <p>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p>		<p>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p> <p>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7.5.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4호, 2017.5.30., 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항제3조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마련 등 업무 화학물질안전원 위임**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 ①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여야 하는 보호장구는 **별표 2**와 같다.
- ③ 보호장구의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 ①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일 경우에는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
-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노출이 없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밸브연결 안전장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장소나 장비를 완전 밀폐하는 구조물 혹은 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경우
 3.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보호장구의 비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 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해야 한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및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번호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장갑
1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00-0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2	메틸하이드라진 (Methylhydrazine)	메틸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0-34-4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	⋮	⋮	⋮	⋮
68	사린(O-Isopropylmethyl phosphonofluoridate)	사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7-44-8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69	염화시아 (Cyanogenchloride)	염화시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06-77-4	전면형 송기마스크 이상	화학물질용보호복 3 또는 4 형식(전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 전면형이나 반면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부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호흡보호구를 선택하여 착용할 것

【별표 2】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종류(제4조제2항 관련)

작업상황 ※ 기본적으로 사람의 접근이 필요 없는 자동화 작업은 적용되지 않음	사고대비물질 분류*					
	A(14종)	B(5종)	C(6종)	D(12종)	E(21종)	F(11종)
① 개방형 기기작업	송기 착용	전면 착용	전면 착용	전면 착용	전면 착용	반면 착용
② 밀폐형 기기작업	송기 착용	반면 착용	기본	반면 착용	기본	기본
③ 상·하차, 원료이송작업	송기 착용	전면 착용	반면 착용	전면 착용	반면 착용	반면 착용
④ 보수작업	송기 착용	전면 착용	반면 착용	전면 착용	반면 착용	기본
⑤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송기 착용	전면 착용	전면 착용	전면 착용	전면 착용	반면 착용
⑥ 시험작업	송기 착용	반면 착용	반면 착용	반면 착용	반면 착용	반면 착용
⑦ 기타 작업(차량운반, 밀폐용기 창고적재, 일상점검, 보안경비 등)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 사고대비물질 분류

그룹명(호흡보호구 형태, 유해성 등급, 성상)	사고대비물질 번호
A(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 높음·중간, 기상/액상) :	6, 12, 36, 48, 51, 53, 56, 57, 68, 69 / 2, 4, 37, 46
B(방독마스크, 높음, 기상) :	1, 43, 49, 50, 55
C(방독마스크, 중간, 기상) :	7, 9, 11, 13, 42, 44
D(방진·방독 겸용마스크, 높음, 액상) :	8, 10, 16, 18, 22, 24, 31, 34, 35, 40, 47, 54
E(방진·방독 겸용마스크, 중간·낮음, 고상/액상) :	20, 29 / 3, 5, 14, 15, 17, 19, 21, 23, 25, 26, 27, 28, 30, 32, 39, 45, 52, 58, 61
F(방진마스크, 낮음, 고상) :	33, 38, 41, 59, 60, 62, 63, 64, 65, 66, 67

※ 반면형 호흡보호구 착용시는 보안경을 함께 착용하여야 한다.
 ※ '기본'은 작업 상황에 맞는 최소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참고 3] 작업상황별 구분 (별표 2 관련)

○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의 선정

작업상황	구분
개방형 기기작업	용기세척 수작업(개방형), 금속세척 및 처리 수작업(개방형), 상압개방용기 원료 투입 및 혼합, 공정기기 세척작업(개방형), 라인 교체작업(개방형), 제품 이송작업(개방형), 공정 내 개방용기나 포대이송(수작업), 제조물질의 개방식 이송작업(액체나 고체물질), 반응기 상단 해치 개방, 여과포 및 분진필터 청소작업, 제품 탈수 및 건조작업, 밀폐공간 내 진입보수작업 등
밀폐형 기기작업	밀폐용기 원료투입 및 혼합, 공정 내 밀폐용기운반(수작업), 제품탈수 및 건조작업(밀폐형) 등
상·하차 및 원료 이송작업	탱크로리 상·하차 작업, 전동펌프 혹은 가스연결 원료이송작업, 핸드펌프 원료이송작업 등
보수작업	가동 중 장치보수작업, 장치해체 후 보수작업 등
누출물 및 폐기물 처리작업	공정시설 증 소량 누출물 제거작업, 폐기물 수거 및 혼합, 유체이송기기의 누출(실내·외), 압력용기의 누출(실내·외), 배관장치 누출(실내·외), 비압력용기의 누출(실내·외), 계장장치 누출(실내·외) 등
시험작업	공정 내 샘플링작업(환기장치 가동), 공정시설·실험후드 내 샘플테스트나 간이시험, 가동 중 장치누설 시험작업, 장치 비파괴시험작업, 개방공간 보수작업(가동중 지상태) 등
기타작업	운반차량을 이용한 일반 도로운반, 밀폐제품·용기의 창고적재, 포대제품의 창고적재, 폐기물 사업장 내 운반, 폐기물 외부반출, 폐기물 사업장 내 적재 및 보관(밀폐형 용기내), 유체이송기기 점검, 기기 주변 점검 및 순찰, 기기 주변 청소 등

3.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p> <p>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__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__ 또한 같다.</p> <p>1. ~ 7.</p> <p>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__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__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p> <p>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p>< 신설, 입법예고 ></p> <p>② __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③ __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p> <p>④__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4.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법		시행규칙
<p>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p> <p>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p> <p>③</p> <p>④</p> <p>⑤</p>		<p>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p> <p>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해당 서류의 전자문서와 함께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방법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 개정, 입법예고 ></p>

■ **관련고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7-104호, 2017.5.30. 시행]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260호, 2015.1.1. 시행]

5.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법	시행규칙
<p>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p> <p>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p> <p>②</p> <p>③</p> <p>④</p> <p>⑤</p> <p>⑥</p>	<p>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신설 2017.5.30., 시행 2018.1.1.></p> <p>제21조의3(소규모 취급시설의 관리 기준) : < 신설, 입법예고 ></p> <p>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p> <p>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와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신설, 입법예고 ></p>

■ **관련고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2017.6.7. 시행]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6호, 2017.6.7. 시행]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2015.1.1. 시행]

-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2.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칙 제21조의3(소규모 취급시설의 관리 기준) : 신설, 입법예고 (?? 확인 필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명과 재산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규칙 제23조 ⑦항(연구실 검사제도 운영방안 개정) : 신설, 입법예고

● 연구실 검사

- 기존 :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모두 점검
- 개정 :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개정('17.2.6)·시행('17.5.7)
- 화학물질관리법 규칙 제23조제7항의 신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은 환경부 검사 제외

단, 시험 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Pilot Plant)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관리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 3] 정기점검 실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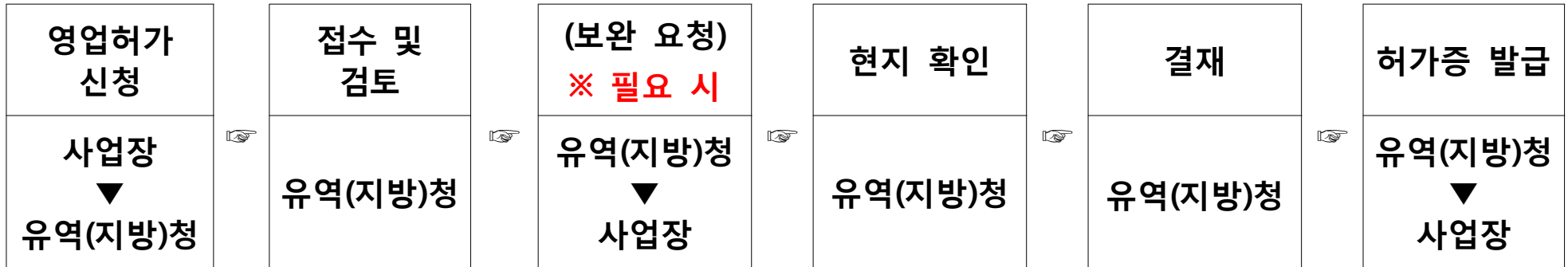
분야	점검항목	양호	불량	해당없음
화공안전	미사용 시약 적정 기간 보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약품 성상별 분류 보관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폐액용기 보관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폐액의 성상별 분류, 전용용기 보관 및 성상분류명 부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척설비(세안기, 샤워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독성물질의 사용 및 보관, 누출여부 확인 등 관리 상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화공안전 분야 위험 요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검사항목	화학물질 배관의 강도 및 두께 적절성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밸브 등의 개폐방향을 색채 또는 기타 방법으로 표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배관 내 물질, 압력, 흐름방향, 등 표시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제조·사용설비에 안전장치 설치여부(과압방지장치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시설 또는 배관, 부속품 등 부식방지조치 및 적정 재질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저장시설 또는 용기 등 파손, 부식, 균열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시 해당 물질의 성질에 맞는 온도, 압력 등 유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가열·건조설비의 경우 간접가열구조 여부 (단,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 안전한 장소설치, 화재방지설비 설치의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설비에 정전기제거 유효성 여부 (접지에 의한 방법, 상대습도 70%이상하는 방법, 공기 이온화하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피뢰침 설치 여부 (단, 취급시설 주위에 안전상 지장 없는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가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화기취급시설 8m이상 우회거리 확보 여부 (단,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제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 또는 저장설비의 연결부 이상 유무의 주기적 확인(1회/주 이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량기준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누출시 감지·경보할 수 있는 설비 설치 여부(CCTV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배관 말단부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에 조명등을 방폭형으로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점멸스위치 출입구 밖 설치 유무 (스위치로 인해 화재·폭발우려가 있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출설비의 국소배기방식 여부 (단,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배관이음 등으로 된 경우, 건축물 구조 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해 전역방식으로 설치해야 할 경우는 전역방식 가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배출설비가 배풍기, 배출다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배출 가능한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재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소화설비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 중 비상시 응급장비 및 개인보호구 비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긴급세척시설 설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제조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
 - ※ 직접 제조한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허가 이외 별도의 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판매업)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 판매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저장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 ※ 수탁 보관·저장중인 유해화학물질을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운반업)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사용업)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
 - ※ 사용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 보관·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반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법 제28조

● 허가 절차(규칙 제27조)



※ 검토 단계에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이 발견될 경우 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 구비서류(규칙 제27조)

- 적합 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취급시설 검사 결과서”, “위해관리계획서”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연간취급예정량(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명세서(시행규칙 별표6)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운반업인 경우)
- 결격사유 조회관련 서류

규칙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추가(시행 2017.5.30.)

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증가)로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시범생산용인 경우
(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에만 해당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 5.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규칙
<p>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p> <p>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u>환경부령으로 정한 자</u> 	<p>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__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__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환경정책기본법」__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__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_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__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관련고시**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2015.12.29. 시행]

9.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 2017. 12. 28 시행

법	규칙 제30조의2 : 신설, 입법예고
<p>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p>	<p>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p> <p>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통신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 확인

10. 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임무) : 2017. 12. 28 시행

법	규칙 제31조의2 : 신설, 입법예고
<p>제29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의무)</p> <p>① 제29조제2호에 따라 <u>영업허가를 면제 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p>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12.27.></p>	<p>제31조의2(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p> <p>①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u>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u>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 판매장 입구 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시약 정보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에 시약의 해당 용도로만 사용 및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판매업 주소		
판매업 대표전화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용도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 예방	물 반응성 및 위급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관·저장	보관 장소 및 혼합 적재 금지 품목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반	포장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외	그 밖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 2017. 12. 28 시행

법	규칙 제31조의3 : 신설, 입법예고
<p>제29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p> <p>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12.27.></p>	<p>제31조의3(시약 판매업 신고 등)</p> <p>①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금지물질 취급의 허가를 받은 시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p>② ~ ⑦</p>

규칙 제31조의3(시약판매업 신고 등) : 신설, 입법예고

- ①.....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라 **시약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품목의 수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한 경우
- ⑤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원본**
-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약판매업 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시약 판매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자가 [] 위탁 [] 임차		
	① 보관·저장 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kg 또는 l	
	④ 보관·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m³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m³
	⑥ 종업원 수	명	⑦ 사업장 면적	m²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약 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동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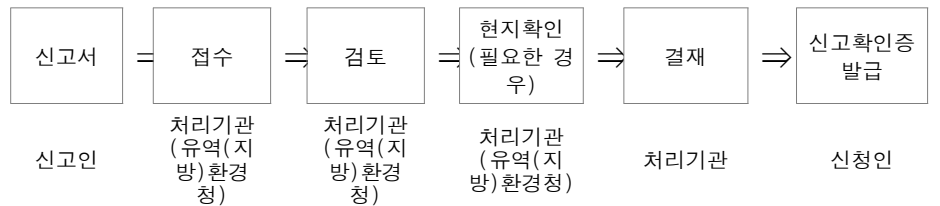
작성방법

- ②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적습니다.
-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적습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번호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					
제 호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자가 [] 위탁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명				전체연간취급량	kg 또는 l		
보관·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m³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m³		
종업원 수				사업장 면적	m²		
취급 품목 현황	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CAS No.	제품명	취급예정량 (kg 또는 l)		비고	
				월간	연간		
준수 사항							
<p>「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신고번호

제 호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시약 판매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12.

도급신고 : 도급신고서 제출기한 변경

법	시행규칙
<p>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p> <p>①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p> <p>③.....</p> <p>④.....</p>	<p>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p> <p>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그 도급을 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② 법 제31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사항" 이란_____.</p> <p>1. ~ 5.(현행과 같음)</p>

■ **관련고시** :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537호, 2015.1.1. 시행]

1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운반업의 유해화학물질 점검원 선임기준 변경

법	시행규칙
<p>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p> <p>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p> <p>③.....</p> <p>④.....</p> <p>⑤.....</p> <p>⑥.....</p> <p>⑦.....</p>	<p>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p> <p>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7.5.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1명. 다만, 종업원이 10인 미만인__겸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대수가 20대 이하인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 다만,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이 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사자 500명당 1명을,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경우에는 종사자 5천 명당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간 취급량이 천 톤 미만인 경우 : 1명 2) 연간 취급량이 천 톤 이상 만 톤 미만인 경우 : 2명 3) 연간 취급량이 만 톤 이상 십만 톤 미만인 경우 : 3명 4) 연간 취급량이 십만 톤 이상 백만 톤 미만인 경우 : 4명 5) 연간 취급량이 백만 톤 이상인 경우 : 5명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안전교육 이수시간 세분화

법	시행령	규칙
<p>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p> <p>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p> <p>②.....</p> <p>③.....</p>	<p>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p> <p>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p>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p> <p>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2017.5.30.></p> <p>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가 화학사고를____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7., 2017.5.30.></p> <p>④.....</p> <p>⑤_____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6의3과 (←별표6의2와) 같다. <신설 2016.4.7., 2017.5.30.></p> <p>⑥.....</p> <p>⑦.....</p> <p>[시행일:2017.1.1.]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관련 부분</p>

[별표 6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제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u>기술인력</u>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u>유해화학물질관리자</u>	가. <u>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u> 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u>취급 담당자</u>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3) <u>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u>	매 2년마다 16시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법		규칙
<p>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p> <p>①.....</p> <p>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개정 2016.12.27., 시행 2017. 12. 28 ></p> <p>③.....</p>		<p>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p> <p>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p> <p>① ---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려는자→)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6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폐업 또는 휴업→) 폐업, 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10일전에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을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긴급가동중단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긴급하게 가동 중단한 경우에 한한다)</p> <p>< 개정, 입법예고 ></p> <p>②.....</p>

허가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 폐업
- [] 휴업
- [] **가동중단**
- [] 재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폐업예정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가동중단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폐업, 가동중단 사유				
	휴·폐업, 가동중단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보유 여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시설을 ([] 폐업·[] 휴업·[] 가동중단·[]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수수료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조치결과서 4. 긴급가동중단사유서(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긴급하게 가동 중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11,7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16.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법		규칙
<p>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p> <p>①.....</p> <p>②.....</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1.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p> <p>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p> <p>④.....</p> <p>⑤ 환경부장관은....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p> <p>⑦.....</p> <p><개정 및 신설 2016.5.29., 2017.05.30 시행></p>		<p>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p> <p><개정 2017.5.30.></p> <p>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p> <p><개정 2017.5.30.> < 개정, 입법예고 ></p> <p>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p> <p><개정 2017.5.30.></p> <p>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p> <p><개정 2017.5.30.></p>

규칙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 개정 2017.5.30.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규칙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 개정 2017.5.30.

- ① (현행과 같음)
-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안전관리담당조직 관련)
 2. 법 제4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주민소산, 사후조치 관련)
 3. 그 밖에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칙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개정 2017.5.30.

- ① 법 제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 **해당 서류의 전자문서와 함께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입법예고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확인 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에 따른 사항만을 포함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④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3.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화학사고 발생시 유·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위해관리계획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방식으로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7.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 2017. 12. 28 시행

법	시행규칙
<p>제44조(화학사고 현장대응)</p> <p>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p> <p>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 본조신설 2016.12.27. ></p> <p>※ 현장수습조정관 :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화관법 규칙 제50조)</p>	<p>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p> <p>< 신설, 입법예고 ></p> <p>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p> <p>< 신설, 입법예고 ></p>

규칙 제50조의2,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및 해제) : 신설, 입법예고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수계·토양 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
-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2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서를 발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 가동중지표지를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 발부 이전에 가동중지표지를 시설에 부착하여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서 또는 가동중지표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 시설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 재 입법예고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안전·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안전·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호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동중지 대상시설	
가동중지 사유	

유역(지방)환경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발부번호 : 호

가 동 중 지 표 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환경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설 가동을 재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동중지 대상	
가동중지 사유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현장수습조정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환경관서장의 허가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주)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가 동 중 지	16×16(mm)	고딕체
유역(지방)환경청장	6×6(mm)	"
나 머 지	4×4(mm)	"
※ 이표지는 ~	4×4(mm)	"

2. 재료는 스티커로 하고 전체 크기는 164×185(mm)를 기본으로 2~4배 크기를 종류별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테두리띠는 두께 8(mm)이고 노란색으로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18. 제49조(보고 및 검사) : 2017. 12. 28 시행

법	시행규칙
<p>제49조(보고 및 검사 등)</p> <p>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2016.12.27.></p> <p>1. ~ 6.</p> <p>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p> <p>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p> <p>8. ~ 11.</p> <p>②.....</p>	<p>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p> <p>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p> <p>< 개정, 입법예고 ></p> <p>②.....</p> <p>③.....</p>

19.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 2017. 12. 28 시행

법	시행규칙
<p>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p><개정 2016.12.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6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7. 제40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p>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같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p>	<p>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p> <p>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p>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5.30.></p>

20. 벌 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 10.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017. 12. 28 시행>

11.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2017. 12. 28 시행>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2016.12.27.>

1. ~ 4.

4의2. 제41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17. 5. 30 시행>

4의3.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017. 12. 28 시행>

5.

20. 벌칙 및 과태료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 3.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2017. 12. 28 시행>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 7.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2017. 12. 28 시행>

9. ~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시약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2017. 12. 28 시행>

2. ~ 3.

③

28.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 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규칙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 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200km 이상 (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km 이상)의 거리를 운행)]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일반우편)로 보내지 말 것.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또는 소량의 견본품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봉하는 등 견고하게 포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 3)

4) 그림문자: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5) ~ 7)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다. 비고 :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이 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신설,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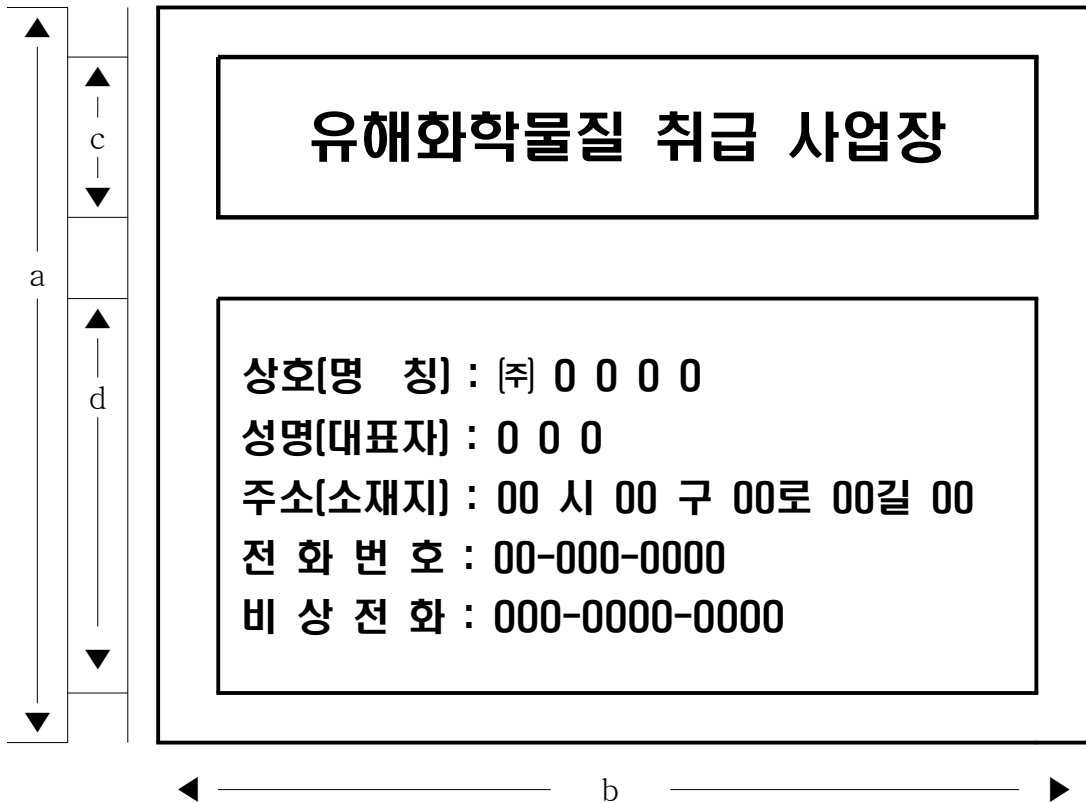
1.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다. 글자크기, 라. 색상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및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출입구, 건물 외벽 등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장소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 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상호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표시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량기준 이상의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대상 사업장에 한정한다

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1) ~ 2)

3)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공정개요, 운전조건, 반응조건 및 비정상운전조건에서의 연동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수정)

나) 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기타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자료(긴급차단밸브 등) 등 주요 기기의 취급·저장량을 포함한 공정 흐름도 (Process Flow Diagram, PFD).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취급설비별로 유입·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종류별 함량 및 수량을 기입한 순서도로 공정흐름도를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만, 배관설비가 없는 실내 보관시설 등 공정배관 계장도의 작성이 불가능한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중 일부 내용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설비를 연결하는 배관의 재질·크기, 펌프 등 동력 기계의 종류 및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설비의 배치와 간격을 표시한 도면으로 공정배관계장도를 대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 8) 3), 5) 또는 6)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경우에는 출입구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9)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다. 사고예방

- 29)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나 보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운 이후로서 기체상 물질의 화재·폭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고, 취급시설 내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다른 시설로부터의 유해화학물질 유입을 차단한 상태로서 그러한 취급시설의 정비나 보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입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를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 30) 29) 단서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신하여 입회하는 경우에는 입회기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건축물

-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연재료나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출입구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 저장·보관시설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화성,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은 제외한다.

라. 피해저감

- 7)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벽 설치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방류벽 대신 저장설비 주위에 트렌치 등의 배수 시설(폐수처리시설 또는 집수시설과 연결된것만 해당한다), 집수시설 및 유출·누출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5.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사고예방

13) 운반차량으로 용기를 적재하여 운반할 때에는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용기를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가) 운행 중에 용기가 흔들려 충돌하지 않도록 용기에 고무링을 씌우거나 적재함에 넣어 세워서 적재할 것

나) 용기는 1단으로 적재할 것. 다만, 목재·플라스틱 또는 강철재 등으로 만든 운반대(견고한 상자 또는 틀 형태의 것을 말한다)에 안전하게 적재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으로 적재할 수 있다.

다) 용기를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시키되, 밀폐된 적재함 또는 운반대를 이용하지 않고 용기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그물 등으로 덮고 로프 또는 짐을 조이는 공구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6. 배관 이송 시설 및 설비 기준

나. 배관밸브

5) 배관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그 두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해당 배관별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배관의 두께는 배관의 외경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것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외에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시하여야 한다.

배관의 외경(단위 mm)	배관의 두께(단위 mm)
114.3 미만	4.5
.....
508.0 이상	9.5

20) 1)부터 1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관등의 구조, 두께 및 강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 고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기준 또는 조치사항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신설, 입법예고>

3. 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라. 피해저감

- 5) 바) 방류벽은 실외 저장·보관설비의 지름에 따라 그 저장설비의 옆판으로부터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다. 사고예방

- 23) 운반용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물질을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을 동일 사업장 내에서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고체물질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고체 및 액체 물질을 담은 운반용기의 공간용적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라) 액체물질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마)→라) 하나의 (외장용기→)운반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물질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 30) 운반 저장설비(탱크로리)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 나)

다) 액체 물질을 담은 운반 저장설비(탱크로리)의 공간용적은 운반 저장설비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신설)

라) 하나의 운반 저장설비에는 다른 종류의 물질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신설)

1. 취급시설·장비 기준

가. ~ 라.

마.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 자.

~~차. 별표 5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기술적 검토 업무를 지원 또는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종업원→)**운반업 또는 취급 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경우와**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운반업, 판매업→)**판매업** 또는 사용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기술사 또는 위험물·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화공·화약류제조·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화약류제조·산업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환경·위험물·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별표 6의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 <신설 2017. 5. 30.>

[별표 6의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 <개정 2017. 5. 30.>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 2017. 5. 30.>

● **현행 즉시신고 규정 4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 즉시신고 3회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로 행정처분 강화**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3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 허가 취소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개정 2017. 5. 30.>

○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 지정 및 수량기준 설정

(단위 : kg)

번호	사고대비물질명(CAS번호)	적용범위	제조·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
70	니켈 카르보닐(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7782-65-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3	트리플루오로보란(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	1,000
74	트리클로로 붕소(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	1,000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6	브롬(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77	세렌화 수소(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78	이소프렌(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0	20,000
79	1,1-디클로로에틸렌(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0	헥사메틸디실록산(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1	펜타카르보닐 철(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2	오불화 브롬(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3	염화 티오닐(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4	사염화 타이타늄(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5	클로로피크린(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86	비닐 에틸 에테르(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00	20,000
87	실란(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88	디실란(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89	디클로로실란(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90	트리클로로실란(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1	메틸디클로로실란(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115-21-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5	테트라메틸실란(75-76-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6	테트라클로로 실리콘(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5,000	750
97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7783-61-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000	500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개정, 입법예고>

비고

1. ~ 3.
4.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로서 정상 운전 상태에서 인접한 취급시설과 해당 시설 간에 사고대비물질이 연속적으로 유입·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취급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대 용량이 “보관·저장수량” 이상인 경우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이 배관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결된 취급시설 각각의 최대 용량을 합산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용 배관과 같이 상시 닫힌 상태로 운전되는 배관으로만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5. 그 밖에 최대수량의 산정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9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운반자 및 운반시간·경로·노선” →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으로 한다.
-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제33호의5서식 안전성 평가 신청서 신설
- 별지 제48호서식(도급신고서)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별지 제46호서식, 제47호의2서식, 제47호의3서식, 제47호의4서식, 제47호의5서식, 제54호서식, 제63호의2서식, 제63호의3서식, 제63호의4서식, 제74호서식, 제7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및 신설, 입법예고>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에 관한 적용례)

-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 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 가운데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 규정으로 인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입법 예고>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 인증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본인 인증 방법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의2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제31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고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약 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취급시설의 관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2018년 6월 30일 이후부터** '소규모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확인 필요)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전자문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 제583호(2014.12.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개정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나목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 제2호가목에서 정한 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충족하여야 한다.
 1. 종업원 30인 이상인 자: 2017년 12월 31일
 2. 종업원 30인 미만인 자: 2018년 12월 31일

III. 고시 개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6.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2017.6.7., 일부개정]

< 제6조의2 신설 >

제6조의2(방류벽 설치 예외 기준) 규칙 별표 5 제2호(실내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라목 7)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 인정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한한다.

1. 건축물 벽체로 인한 공간 부족
2.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제7조(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제2호 조건 추가 >

2. 규칙 별표 5 제3호(실외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기준) 라목 5)바)의 규정에 따른 방류벽은 실외 저장·보관 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 나.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 다.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6.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5호, 2017.6.7., 일부개정]

< 제12조 신설 >

제12조(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2.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상호인정
 - 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I. 옥내저장소의 기준)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1)항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I. 지하탱크저장소 기준)과「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다목 6)항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Ⅲ. 이송취급소 기준 제5호 나목)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항 나)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상호인정
 -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3)항 및 제2호 가목 2)항
 -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0조(내화기준)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6)항 및 제2호 가목 11)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제2조(정의) 6, 7호 신설 > : 시행규칙안 제23조제7항 후단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생산용 설비’ 를 규정

6. 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른 “시험 생산용 설비”란 「연안법」 제2조에 따른 연구실의 부속시설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단위설비의 규모가 회분식은 1회 처리용량이 100kg 이상, 연속식은 시간당 처리용량이 10kg 이상인 경우

나. 단위설비의 운영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령·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피해저감에 대한 세부기준) 2, 3, 4호 개정 > :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의 실외 저장·보관 시설의 방류벽 세부기준

1.

2. 규칙 별표5 제3호 라목 5)라)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설비를 혼합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면서 저장설비 상호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설비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4.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바)의 규정에 따른 방류벽은 저장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17.6.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6호, 2017.6.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___ [별표 5] ___기준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관의 강도)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0)에 따른 배관의 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3. 가. 나. 다. (현행과 같음)

제2조의2(배관의 두께) 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0)에 따른 배관의 두께는 최고사용압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두께 기준을 따른다.

1. 한국산업표준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최소 두께(KS D 3576)
2. 한국산업표준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최소 두께(KS D 3562)
3. 폴리에틸렌(PE)관, 폴리염화비닐(PVC)관, 기타 강관 등 그 밖의 재질은 한국산업표준에서 인증한 최소 두께
4.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규격 또는 국내 인증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른 최소 두께

제3조(배관에 부착된 밸브의 설치)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20)에 따른 배관에 부착된 밸브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설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 3.
- 4.
- 5.
- 6.
7.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2조(용어정의)

1. “안전성 평가”라 함은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별표 5의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2. “안전성 평가서”라 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가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규칙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 시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규칙 별표 5 제2호(실내저장·보관시설) 라목 7)항의 방류벽 등
2. 규칙 별표 5 제3호(실외저장·보관시설) 라목 5)항의 방류벽 등
3. 규칙 별표 5 제1호(제조·사용시설) 가목 11)항의 방지턱 등
4. 규칙 별표 5 제1호(제조·사용시설) 가목 10)항의 집수설비
5. 규칙 별표 5 제2호(실내저장·보관시설) 가목 6)항의 집수설비
6. 규칙 별표 5 제6호(배관이송시설) 라목 5)항의 긴급차단밸브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4조(평가의 신청) ① 규칙 별지 제33호의5 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적용대상 취급시설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 3부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하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2. 취급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취급시설 공정개요
4. 다음 각 목에 따른 취급시설에 관한 도면
 - 가. 설비배치도
 - 나. 공정배관계장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안전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를 입증하는 자료
 -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단, 긴급차단밸브는 제외)
 - 나. 규칙 별표 5의 기준 적용이 어려운 사유
6.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임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증하는 근거 자료
 - 가. 공학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 나. 국내 또는 국외 유사 분야 공인 기준의 비교·분석
 - 다. 그 밖의 안전성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7.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대체방안에 대한 시설개선 완료 기간(월)
8. 그 밖에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 신청인은 제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취급시설에 대해 구조·시스템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규칙 별표 5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2.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취급시설이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되는 경우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5조(평가의 방법) ① 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서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서면평가는 안전성 평가서가 접수되어 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안전원장은 서면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현장방문 일정을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안전원장은 서면평가를 마친 후 현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서면평가 결과와 현장평가 일정을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현장평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 후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⑤ __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장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완 등) ① 안전원장은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세내역 및 제출기한을 기입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안전원장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내용을 포함한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승인 통보를 할 수 있다.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7조(평가결과 및 처리) ① 안전성 평가결과는 「안전성 평가의 평가절차 및 세부지침」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승인** : 조건부 승인 후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또는 서면평가에서 시설개선 없이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조건부 승인** : 서면평가에서 대체방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또는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불승인** :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② 안전원장은 안전성 평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장평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규칙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규칙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통보를 받은 평가 결과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7.11.17-1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규모를 정함(←규모 미만의 유해 화학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별표 1에 규정된 수량(이하 "소량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은 일일 취급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한다.

③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한 양을 해당 유해 화학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④ 별표 1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도 불구하고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이 규칙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규칙 별표 10에서 정한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을 해당 사고대비물질의 소량기준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일일취급량 및 보관·저장수량의 산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제3조(혼합물 등의 소량기준) ①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②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7.11.17-12.7)

● <별표 1>의 비고의 위치를 표의 후단에서 전단으로 이동하고 내용 개정

1. 번호 란에 “*”표시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의 1/2을 해당 수용액의 소량기준으로 한다.(← * 수용액 상태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소량기준을 1/2로 한다.)

2. “일일취급량”이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1. 일일취급량이란 해당 제조·사용 설비 또는 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 등에서 하루동안 최대로 취급, 사용, 제조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3.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시설에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2. 보관·저장량이란 보관·저장 설비 또는 시설에서 최대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만,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정으로 간주한다.)

3.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 산정할 경우에는 규제대상 함량(농도)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삭제(본문 제3조제1항으로 이동))

4.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는 개별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을 구한 다음,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 미만일 때 제2조제1항에 따른 소량기준 미만으로 본다. 이 경우 실내와 실외에 대하여 ‘동일한 공간’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다.

(← 4. 해당 제조·사용 설비 또는 시설 및 그 취급시설에 연결된 배관 등에서 두 종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사용,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각각의 일일취급량을 구한 다음,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이 1미만인 경우에는 소량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R = \frac{C_1}{T_1} + \frac{C_2}{T_2} + \dots + \frac{C_n}{T_n}$$

주) C_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유해화학물질 각각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

T_n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유해화학물질 각각의) 일일취급기준 또는 보관·저장기준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7.11.17-12.7)

[별표 1]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번호	CAS_NO	화학물질명(국문)	화학물질명(영문)	소량기준 (kg)	
				일일취급기준	보관·저장기준
1	50-00-0	포르말린(<u>포름알데히드</u>)	Formalin ; <u>Formaldehyde</u>	50	750
2	51-75-2	메클로르에타민	Mechlorethamine	200	3,000
3	52-51-7	브로노폴	Bronopol	400	6,000
4	52-68-6	트리클로르폰	Trichlorfon	400	6,000
5	54-11-5	니코틴	Nicotine	50	750
6	55-38-9	펜티온	Fenthion	400	6,000
7	56-23-5	사염화 탄소	Carbon tetrachloride	400	6,000
8	56-38-2	파라티온	Parathion	200	3,000
9※	57-24-9	스트리시닌	Strychnine	400	6,000
10	57-39-6	메틸 아폭시드	Methyl aphoxide	400	6,000
11	57-74-9	클로르단	Chlordane	400	6,000
12	60-34-4	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50	750
13	60-51-5	디메 토에이트	Dimethoate	400	6,000
14	61-82-5	아미트롤	Amitrole	400	6,000
15	62-53-3	아닐린	Aniline	400	6,000
16	62-73-7	디클로르보스	Dichlorvos	400	6,000
17※	62-74-8	플루오르화아세트산나트륨	Sodium fluoroacetate	400	6,000
18	64-18-6	포름산	Formic acid	400	6,000
19	64-67-5	황산 디에틸	Diethyl sulfate	400	6,000
20※	66-81-9	시클로헥시미드	Cycloheximide	400	6,000
21	67-56-1	<u>메틸알코올</u>	<u>Methylalcohol</u>	400	6,000
22	67-66-3	클로로포름	Chloroform	400	6,000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2] 유해화학물질 소량 산정방법

1.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소량은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라 아래의 산정기준표¹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가. 유해성 분류기준은 법 제16조 및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나.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기준을 확인하여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의 수치를 일일 취급기준으로 한다. 보관·저장기준은 일일 취급기준에 15를 곱한 수치로 산정한다. 이때 2가지 이상의 분류기준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

(단위 : kg)

구 분		급성 독성 ¹				기타 건강유해성 및 환경유해성	비고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폭발성물질	구분1~구분2	200	200	200	200	200	
	구분3이상	400	400	400	400	400	
인화성가스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100	200	400	400	
인화성액체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200	400	400	400	
	구분3	200	200	400	400	400	
인화성 에어로졸	구분1	5	50	100	200	200	
	구분2	50	200	400	400	400	
인화성고체	구분1	200	400	400	400	400	
	구분2	400	400	400	400	400	
산화성가스	구분1	5	50	100	200	200	
산화성액체	구분1	50	200	400	400	400	
	구분2이하	200	400	400	400	400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 연혁

번호	행정규칙명	행정규칙종류	발령번호	발령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기관명
1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7-163호	2017.9.1.	2017.9.1.	일부개정	환경부
2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7-137호	2017.7.13.	2017.7.13.	일부개정	환경부
3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7-130호	2017.7.7.	2017.7.7.	일부개정	환경부
4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7-76호	2017.4.14.	2017.4.14.	일부개정	환경부
5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6-249호	2016.12.28.	2016.12.28.	일부개정	환경부
6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6-194호	2016.9.30.	2017.1.1.	일부개정	환경부
7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6-178호	2016.9.7.	2016.9.7.	일부개정	환경부
8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6-137호	2016.7.13.	2016.7.13.	일부개정	환경부
9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6-2호	2016.1.8.	2016.1.8.	일부개정	환경부
10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5-215호	2015.11.6.	2015.11.6.	일부개정	환경부
11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5-29호	2015.3.12.	2015.3.12.	일부개정	환경부
12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5-9호	2015.1.27.	2015.1.27.	일부개정	환경부

현재 상기 환경부고시 제2016-2호 ~ 제2017-163호 : 유독물질(고유번호 2016-1-724란에서 2017-1-810란) 신설
 ☞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영업허가 등 법적 이행사항 확인 필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4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18년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1년까지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III.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절차 안내

1 관련근거

●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화관법 부칙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 ~'17.12.31까지
 - 화관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2 허가범위

- 신규 영업허가
- 변경허가

3 허가대상 별 허가신청 전 이행사항

허가 대상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위해관리 계획서
<p>기본 영업자의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영향평가서 既 제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 장외영향평가서 다시 제출(화학물질안전원) -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장외영향평가서 다시 제출(화학물질안전원) ·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 변경검토서 제출(화학물질안전원) -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시범생산은 제외) : 장외영향평가서 다시 제출(화학물질안전원) -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화학사고 장외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 변경검토서 제출(지방환경청) ● 최초 장외영향평가서 미 제출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추가에 따른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 화관법 규칙 부칙 제6조의 유예기간 내 제출 - 품목추가에 따른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변경허가 신청 시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제출 	<p>○ 기존 시설 (화 관 법 시행('15.1.1)이전 설치·운영시설) : 「유해법」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검사 적합판정 시설의 경우 같음)</p> <p>○ 신규 시설 (화 관 법 시행('15.1.1)이후 설치·운영시설) : 「화관법」에 따른 설치검사</p>	<p>○ 화관법 규칙 별표 10의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경우 만 제출대상</p>
<p>신규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의 유예기간 내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 -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 -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4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적용범위

-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은 영업허가의 면제범위에서 제외됨**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69종이 모두 허가대상임**
다만, 사고대비물질이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 ①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
 →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면서 장외영향평가서 소량기준 미만으로 순수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자(규칙 제31조4호)**
 - ②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유해화학물질 허가면제에 관한 규정)
- 유독물질 지정기준 함량과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함량이 달라서 종전에 허가받지 않고 취급하던 사고대비물질(**에틸아세테이트, 메틸에틸케톤, 나이트로벤젠**)은 2017년 내 허가 받아야 함

- 예)

에틸아세테이트	유독물질 지정기준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
		85% 이상

※ 함량 85% 미만으로 허가 없이 취급하던 에틸아세테이트가 만약 함량 25% 이상인 경우는 **사고대비물질에 해당되어 허가대상이 됨**

-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 이하의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 예)

과산화수소	유독물질 지정기준	사고대비물질 지정기준
		6% 이상

※ 함량 32% 과산화수소를 90톤 이상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님**

< 사고대비물질(69종)리스트 및 적용범위 >

- **붉은색** :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 (42종)
- **검정색** : 유독물질이 아닌 순수사고대비물질(27종)
- **파란색** : 사고대비물질 중 독성가스(20종)

번호	사고대비물질				유독물질(지정함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독성가스
	국문명	영문명	CAS 번호	(지정함량)		
1	아크롤레인	Acrolein	107-02-8	(1 % 이상)	○ (1 % 이상)	○
2	아크릴산	AcrylicAcid	79-10-7	(25 % 이상)		
3	아크릴로나이트릴	Acrylonitrile	107-13-1	(0.1 % 이상)	○ (0.1 % 이상)	○
4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AcrylylChloride	814-68-6	(25 % 이상)		
5	알릴 알코올	Allyl Alcohol	107-18-6	(25 % 이상)	○ (25 % 이상)	
6	알릴 클로라이드	AllylChloride	107-05-1	(25 % 이상)		
7	암모니아	Ammonia	7664-41-7	(10 % 이상)	○ (10 % 이상)	○
8	아르신	Arsine	7784-42-1	(0.1 % 이상)	○ (0.1 % 이상)	○
9	벤젠	Benzene	71-43-2	(85 % 이상)	○ (85 % 이상)	○
10	염화벤질	BenzylChloride	100-44-7	(25 % 이상)		
11	노말-뷰틸아민	n-Butylamine	109-73-9	(25 % 이상)		
12	이황화 탄소	Carbon Disulfide	75-15-0	(0.1 % 이상)	○ (0.1 % 이상)	○
13	일산화 탄소	CarbonMonoxide	630-08-0	(25 % 이상)		○
14	염소	Chlorine	7782-50-5	(25 % 이상)		○
15	이산화 염소	Chlorine Dioxide	10049-04-4	(25 % 이상)	○ (1 % 이상)	
16	클로로설폰산	Chlorosulfonic Acid	7790-94-5	(25 % 이상)	○ (25 % 이상)	
17	메타-크레졸	m-Cresol	108-39-4	(5 % 이상)	○ (5 % 이상)	
18	다이보레인	Diborane	19287-45-7	(25 % 이상)		○
19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141-78-6	(25 % 이상)	○ (85 % 이상)	

20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75-21-8	(0.1 % 이상)	○ (0.1 % 이상)	○
21	에틸렌다이아민	Ethylenediamine	107-15-3	(25 % 이상)		
22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151-56-4	(25 % 이상)		
23	플루오린	Fluorine	7782-41-4	(25 % 이상)		○
24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50-00-0	(1 % 이상)	○ (1 % 이상)	
25	폼산	FormicAcid	64-18-6	(25 % 이상)		
26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7647-01-0	(10 % 이상)	○ (10 % 이상)	○
27	사이안화 수소	Hydrogen Cyanide	74-90-8	(1 % 이상)	○ (1 % 이상)	○
28	플루오르화 수소	Hydrogen Fluoride	7664-39-3	(1 % 이상)	○ (1 % 이상)	○
29	황화수소	HydrogenSulfide	7783-06-04	(25 % 이상)		○
30	다이아이소시아산 이소포론	Isophorone Diisocyanate	4098-71-9	(25 % 이상)	○ (25 % 이상)	
31	메탄올	Methanol	67-56-1	(85 % 이상)	○ (85 % 이상)	
32	메틸 아크릴레이트	MethylAcrylate	96-33-3	(25 % 이상)		
33	염화 메틸	Methyl Chloride	74-87-3	(1 % 이상)	○ (1 % 이상)	○
34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78-93-3	(25 % 이상)	○ (85 % 이상)	
35	메틸 에틸 케톤 과산화물	MethylEthylKetonePeroxide	1338-23-4	(25 % 이상)		
36	메틸 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	60-34-4	(1 % 이상)	○ (1 % 이상)	
37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78-94-4	(1 % 이상)	○ (1 % 이상)	
38	메틸아민	Methylamine	74-89-5	(25 % 이상)		○
39	질산	Nitric Acid	7697-37-2	(10 % 이상)	○ (10 % 이상)	
40	나이트로벤젠	Nitrobenzene	98-95-3	(25 % 이상)	○ (85 % 이상)	
41	파라-나이트로톨루엔	p-Nitrotoluene	99-99-0	(25 % 이상)	○ (25 % 이상)	
42	페놀	Phenol	108-95-2	(5 % 이상)	○ (5 % 이상)	
43	포스겐	Phosgene	75-44-5	(1 % 이상)	○ (1 % 이상)	○
44	포스핀	Phosphine	7803-51-2	(1 % 이상)	○ (1 % 이상)	○

45	옥시염화 인	Phosphorus Oxychloride	10025-87-3	(25 % 이상)	○ (25 % 이상)	
46	삼염화 인	Phosphorus Trichloride	7719-12-2	(25 % 이상)	○ (25 % 이상)	
47	산화 프로필렌	Propylene Oxide	75-56-9	(0.1 % 이상)	○ (0.1 % 이상)	
48	나트륨	Sodium	7440-23-5	(25 % 이상)	○ (25 % 이상)	
49	사이안화 나트륨	Sodium Cyanide	143-33-9	(1 % 이상)	○ (1 % 이상)	
50	황산	Sulfuric Acid	7664-93-9	(10 % 이상)	○ (10 % 이상)	
51	톨루엔	Toluene	108-88-3	(85 % 이상)	○ (85 % 이상)	
52	톨루엔-2,4-다이아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TDI)	584-84-9	(25 % 이상)	○ (25 % 이상)	
53	트라이에틸아민	Triethylamine	121-44-8	(25 % 이상)		
54	트라이메틸아민	Trimethylamine	75-50-3	(25 % 이상)		○
55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75-01-4	(0.1 % 이상)	○ (0.1 % 이상)	
56	인화 아연	Zinc Phosphide	1314-84-7	(1 % 이상)	○ (1 % 이상)	
57	Nitric Oxide	Nitric Oxide	10102-43-9	(1 % 이상)		
58	Nitromethane	Nitromethane	75-52-5	(25 % 이상)		
59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6484-52-2	(33 % 이상)		
60	헥사민	Hexamine	100-97-0	(25 % 이상)		
61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7722-84-1	(35 % 이상)	○ (6 % 이상)	
62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3811-04-9	(98 % 이상)	○ (1 % 이상)	
63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7757-79-1	(98 % 이상)		
64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7778-74-7	(98 % 이상)		
65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7722-64-7	(98 % 이상)		
66	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ate	7775-09-9	(98 % 이상)	○ (1 % 이상)	
67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7631-99-4	(98 % 이상)		
68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	107-44-8	(1 % 이상)		
69	염화시아나	Cyanogen Chloride	506-77-4	(1 % 이상)	○ (1 % 이상)	

■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기준(제45조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관련)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사용 수량(연간)	보관·저장 수량
1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50-00-0	1,500,000	200,000
2	메틸 하이드라진(Methyl hydrazine)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0-34-4	300,000	10,000
3	포름산(Formic acid)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4-18-6	1,500,000	20,000
4	메탄올(Methanol)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7-56-1	1,500,000	200,000
5	벤젠(Benzene)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1-43-2	1,500,000	10,00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87-3	300,000	10,000
7	메틸아민(Methylamine)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89-5	300,000	10,000
8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90-8	300,000	1,500
9	염화비닐(Vinyl chloride)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01-4	1,500,000	200,0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15-0	300,000	10,00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21-8	1,500,000	10,000

■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17.11.22)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위반 사업자

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신고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 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함.**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17.11.22)

4.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 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됨**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감 사 합 니 다